



금융기관 자기자본제도 7: 운영리스크

김동겸 선임연구원

■ 운영리스크(operation risk)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, 인력,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됨.

- 과거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는 주로 시장리스크, 신용리스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, Bearing사 파산 등을 계기로 금융기관 손실 발생원인 중의 하나로 운영리스크가 지적됨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.
- 바젤위원회에서는 금융환경의 변화 및 일련의 금융사고를 계기로 2006년 신BIS협약 개정을 통해 운영리스크를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됨.
 - 운영리스크에는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(legal risk)는 포함되어 있으나, 측정이 힘든 전략리스크(strategic risk)와 평판리스크(reputation risk)는 제외되어 있음.¹⁾

■ 신 Basel 협약에서는 운영리스크의 발생 원인을 내부절차(internal process), 인력(people), 시스템(system), 외부사건(external events) 등 네 가지로 범주로 규정

- 내부절차란 기존 업무 처리 절차의 결함 또는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, 인력은 직원의 업무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함.
- 한편, 시스템은 전산 시스템 등의 장애·고장에 기인한 손실을, 외부사건은 자연 재해, 외부 범죄 행위 등에 의한 손실로 정의하고 있음.

■ 운영리스크는 발생빈도가 낮으나 리스크 발생에 따른 손실범위가 매우 커서 효과적인 측정방법과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, 타 재무리스크와 달리 그 규모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.

1) 법률리스크는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손실 위험으로 소송관련비용, 감독당국의 과징금 등을 포함함. 한편 전략리스크는 경제나 정치 환경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며, 평판리스크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, 고객이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의미함.

- 회사별 내부통제방식에 따라 운영리스크 발생 원인이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요인, 손실 발생가능성, 규모 등을 연계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함.
- 또한, 금융기관별 사업모형의 속성이나 내부통제 환경이 상이하므로 특정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가능성을 타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.

■ **현행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운영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, 보험회사에 대한 위험기준자기자본(RBC) 제도 등을 들 수 있음.**

- 은행의 경우, 총이익을 기준으로 한 기초지표법(Basic Indicator Approach), 업무영역을 기준으로 한 운영표준방법(Standardised Approach), 내부모형을 활용한 고급측정법(Advanced Measurement Approach)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.
 - 기초지표법에서는 직전 3년간 평균 총이익의 15%를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
 - 운영표준방법에서는 은행의 업무영역을 투자금융, 트레이딩과 매매, 소매금융, 기업금융, 지급과 결제, 대행서비스, 자산관리, 소매중개로 구분하여 각 업무영역별 총이익에 일정비율(12~18%)을 곱한 값을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함.
- 보험회사의 운영리스크는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수입보험료에 위험계수 1%를 곱하여 산출함.

〈 표 1 〉 업권별 운영리스크 산출 방식

구분	은행	보험
관련 제도	BIS 자기자본비율	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
산출 방식	● 기초지표법 - 직전 3년간 평균 총이익 × 15% ● 운영표준방법 - 업무영역별 총이익 × 일정비율(주) ● 고급측정법 - 은행 내부측정시스템 이용	●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수입보험료 × 위험계수(1%)

주: 1) 투자금융, 지급과 결제, 트레이딩과 매매: 18%

2) 기업금융, 대행서비스: 15%

3) 소매금융, 자산관리, 소매중개: 12%